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57호 2011. 12. 21. (수)

【조 례】

○ 정선군조례 제2266호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1
○ 정선군조례 제2267호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20
○ 정선군조례 제2268호 정선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	24
○ 정선군조례 제2269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28
○ 정선군조례 제2270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33
○ 정선군조례 제2271호 정선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36
○ 정선군조례 제2272호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 정선군조례 제2273호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43
○ 정선군조례 제2274호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1-141호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지정 고시.....	55
--	----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1-659호 정선군 공공청소년시설(문화의집, 상담센터) 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59
○ 정선군공고 제2011-670호 도로명주소 도로명 변경 심의 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	77

조 례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12. 21.

정선군 조례 제2266호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수”란 제3조에 따른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어진 수목을 말한다.
2. “바꿔심기”란 일정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3.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4.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의 기상적·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5.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의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덮개”란 보호틀 안의 흙의 균음을 방지하여 수분 흡수·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관리대상) 가로수 관리대상 도로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로(고가도로와 지하도는 제외한다)
2.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등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
3. 면도, 리도, 등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
4.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인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가로수 관리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선군 가로수조성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로수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가로수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가로수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가로수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가로수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9. 그 밖의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②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위원회 또는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야한다.

제5조(가로수위원회) ①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자문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를 심의하는 정선군가로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산림정책과장, 건설방재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1. 정선군의회 의원
- 2. 가로수,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3. 가로수(녹지, 조경 포함)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 4. 지역의 주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자
-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 ⑤ 간사는 가로수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 3. 위원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켰을 때
 - 4.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가로수 수종은 다음의 각 호로 한다.

- 1. 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 2. 군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 3. 보도폭, 지장물 유무 등 도로 여건에 적합한 수종
- 4. 군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고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 5. 그 밖에 해당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종
- ② 가로수로서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형이 정돈 되어 있을 것
 - 2. 발육이 양호 할 것
 - 3. 가지와 잎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였을 것
 - 4. 병충해의 피해가 없을 것
 -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끊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잔뿌리가 잘 발달하였을 것
 - 6. 재배수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충족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떼서 이식 및 활착에 지장이 없을 것

제7조(식재기준)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군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구성하고 관리한다.

② 교목의 식재 간격은 6미터~8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위치와 주변 여건, 식재 수종의 수관폭과 생장 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 조성과 지역 여건에 따라 교목과 다층 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④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1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⑤ 인공구조물 또는 지하의 시설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⑥ 군의 가로수는 별표 2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8조(식재지역)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1. 외곽 산림 또는 하천으로부터 도시지역의 녹지 또는 하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지역
2. 도시지역의 단절된 녹지 간 또는 하천 간을 연결할 수 있는 지역
3. 도시지역 중 보행이동인구와 교통량이 많고 녹지가 부족한 시가지 지역

제9조(식재 제한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의 길어깨
2.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3.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지역
4.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5.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다만,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관폭·수고·지하교를 유지할 경우에는 식재할 수 있다)
6.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② 교목성 가로수를 식재하려는 지역의 상층에 전송·통신시설이 있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이 있는 경우 군수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하거나 이설 또는 보완시설을 설치한 후에 식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에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할 경우 이 해당사자와 협의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10조(바뀌심기 및 메워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바뀌심기나 메워심기를 할 수 있다.

1. 고사 가로수
2.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5.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6.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7.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8.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가로수

제11조(관리시설물)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3에 따라 도로노선 별 및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3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시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3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병해충방제) 군수는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4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제13조(외과수술 등) 병충해·분진·화학약품·물리적 압력 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노거수·보호수 등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 객토, 통기, 관수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가지치기)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2.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통행 공간의 확보, 전송, 통신 시설의 안전,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 3. 가지치기는 조경기사 또는 조경기능사 등을 보유한 조경 전문업체가 하여야 한다.

제15조(지형과 토양 보전) 가로수 식재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육환경개선, 환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조성협의 등)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 4. 보도의 포장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 5. 군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17조(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

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험과 재해로 말미암아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 ⑧ 그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제18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군수는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 59조 규정의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
- ③ 군수는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신고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손상하고 파괴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화신고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군수는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자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

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5. 계획에 따른 복구 등

제20조(점검 등) ① 군수는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5월, 11월 등 최소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표 4에 의한 병해충 발생시기 전·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가로수관리 주민참여 등) ① 군수는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의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의 신고
5. 비상재해시의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6. 가로수별 관리인 지정

②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별표 7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민이 도로 상에서 직접 채취할 경우 교통사고 예방
2. 가로수 흔들기,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금지 등

제22조(자료유지)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 의한 가로수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된 가로수는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도로별 식재조성 기준(제7조제1, 4항 관련)

구 분	조성 기준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병렬다층식	도로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10미터 미만	병렬식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7미터 미만	다층식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단열단층식	
⑤ 보도폭 1.5m미만 지역	가로수 식재하지 않음	

[별표 2]

도로별 가로수조성 규격(제7조제6항 관련)

구 분	식재 규격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흉고직경 12cm이상, 근원경 20cm이상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식재 가능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10미터 미만	흉고직경 10cm이상, 근원경 15cm이상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7미터 미만	흉고직경 8cm이상, 근원경 12cm이상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흉고직경 6cm이상, 근원경 10cm이상	

[별표 3]

가로수관리 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제11조제1~3항 관련)

구 분	시설물 규격 및 종류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보호덮개는 입지여건에 따라 지피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10미터 미만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식물 등 다양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7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하계 처리 가능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반원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별표 4]

가로수 주요충해 및 방제법(제12조 관련)

수병	가해수종	가해구분	방 제 법	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	벗 나 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	있	○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 디프제 살포	○ 1화기: 6월 상순 ○ 2화기: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현 사 시 포플러류	가지	○ 피해가지 절단 소각 ○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	○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있	○ 피해가지 절단 소각 ○ 만코지 수화제 살포	○ 1화기: 5월 초·중순 ○ 2화기: 9월 초~중순
텐트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벗 나 무 느티나무	있	○ 알덩어리 채취 소각 ○ 디프제 살포	○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	버즘나무	있	○ 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 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 ○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	○ 수관살포: 5월 하순 ~6월 초순 ○ 나무주사: 6~7월
짚시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벗 나 무	있	○ 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 디프제 살포	○ 4월 중·하순
응애류	벗 나 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	있 가지	○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	벗 나 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	있 가지	○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 발생초기(수시)
각지벌레류	벗 나 무 소 나 무 포플러류 등	있 가지	○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 로프리드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 발생초기(수시)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별표 5]

비용부담의 산정 기준(제17조제4항 및 제8항 관련)

^ 피해 발생 의 경우 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 피해 이외 의 원인 발생 의 이유 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군수의 승인 및 감독 ※ 군수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군수가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군수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군수가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표 6]

훼손자 신고인 보상금 지급기준(제19조제2항 관련)

훼손자 부담금	보상금지급액 (원)	비고
10만원 미만	20,000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찰서 및 관할지구대, 파출소 등의 신고 사항은 보상에서 제외
10만원 ~ 50만원 미만	40,000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50,000	
100만원 이상	70,000	

[별표 7]

가로수 유지·관리 주민참여 지원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가로수 유지·관리	지원내용	비고
1. 물주기	관수차량	군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지원기준
2. 비료주기	비료지원	
3. 병해충 발생신고	방제장비, 약제	
4. 생육피해 장애물 제거	장비 및 물품	
5. 사고 또는 고의 피해나 피해우려가 있을 경우	“	
6.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	

※ 가로수의 열매 채취가 도로경관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가로수 유지관리에 참여 할 경우 부산물인 열매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고서(제17조제2항 관련)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납부기간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정 선 군 수 귀 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제 정 이 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가로수 관리대상 도로 규정(제3조)
- 정선군가로수위원회 운영 규정(제5조)
- 가로수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식재기준, 식재지역 등 규정 (제6조~제10조)
- 가로수 관리시설물 및 병해충방제, 외과수술, 가지치기 등 규정 (제11조~제15조)
-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 식재 등 사업 시행시 비용부담 및 부담금 징수 규정(제17조~제18조)
- 가로수 훼손에 대한 주민신고 절차 및 보상금 지급 규정(제19조)
- 가로수관리 주민참여 등 규정(제21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12. 21.

정선군 조례 제2267호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100분의 30이상”을 “100분의 15이상”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 각 호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74조제1항제6호”를 각각 “제74조제1호마목”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기금관련” 을 “재난 및 기금관련”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③ (생 략)</p> <p>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정선군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u>기금관련</u>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⑦ (생 략)</p>	<p>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재난 및 기금관련</u> ----- ----- ----- ----- ----- -----.</p> <p>⑤~⑦ (현행과 같음)</p>

개 정 이 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시행(2011.06.27)에 따라 변경된 규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적립 및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장기예치기금액 적립비율 변경(제3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개정으로 장기예치기금액을 총 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변경
- 정선군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변경(제6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시행령 제74조가 규정하는 용도로 변경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12. 21.

정선군조례 제2268호

정선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중 "수입증지요금계(이하"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이하"무인발급기"라 한다)"를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 또는 행정정보시스템(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지적시스템 등을 총망라하여 이하 "행정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조제2항 본문중 "계기 또는 무인발급기는"을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은"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제4호 "계기 또는 무인발급기 고유번호"를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 고유번호"로, 같은조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종전의 제3항)중 "계기 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를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로 하고, "계기 또는 무인발급기 고유번호"를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 고유번호"로 한다.

또한, 같은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행정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5조제2항중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을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과 정선군 심벌마크"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계기 및 무인발급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을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정산)"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계기 또는 무인발급기"를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조제3항중 "계기 또는 무인발급기"를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계기 및 무인발급기상"을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2(수입증지 요금계기등의 사용)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u>수입증지요금계(이하"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이하"무인발급기"라 한다)</u>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② <u>계기 또는 무인발급기</u>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3. (생략) 4.<u>계기 또는 무인발급기 고유번호</u> <u><신설></u></p> <p>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u>계기 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u>,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u>계기 또는 무인발급기 고유번호</u>, 발행계시일 등 필요사항을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p> <p>제5조(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①(생략) ②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3.0센티미터로하고 모양은 <u>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u> 한다.</p> <p>제20조(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사용 수입금의 정산)①(생략) ② <u>계기 또는 무인발급기</u>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조정카드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u>계기 또는 무인발급기</u>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u>계기 및 무인발급기상</u>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p>	<p>제4조2(수입증지 요금계기등의 사용)①----- -----<u>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 또는 행정정보시스템(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지적시스템 등을 총망라하여 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u>-----.</p> <p>② <u>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u>은 ----- -----.</p> <p>1.~3. (현행과 같음) 4.<u>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 고유번호</u> ③ <u>행정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증명명에는 제5조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 한 수입증지로 표시되어야 한다.</u> ④----- ----- <u>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u>, -----<u>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 고유번호</u>, ----- -----.</p> <p>제5조(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①(현행과 같음) ② ----- ----- <u>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과 정선군 심벌마크로</u> --.</p> <p>제20조(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수입금의 정산) ①(현행과 같음) ② <u>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u>----- ----- ----- --. ③ <u>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u>----- -----<u>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상</u>----- -----.</p>

개 정 이 유

- 행정정보시스템의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수입증지 전자날인으로 인한 수수료 납부, 수입금 정산 등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 수입증지를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항목 개정 (제4조의2)
- 정선군의 전자 수입증지 도안을 정선군 심벌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제5조)
- 종전의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에 대한 규정에 행정정보시스템 사용을 포함한 수입금의 정산으로 개정(제20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12. 21.

정선군 조례 제2269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564명”을 “56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중 “553명”을 “556명”으로 한다.

별표 2,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6% 이내	27.5% 이내	33% 이내	<u>23.5% 이내</u>	<u>9.0% 이상</u>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5% 이내	<u>16.5% 이내</u>	<u>12% 이내</u>	<u>33.5% 이내</u>	<u>33% 이상</u>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8% 이내	92% 이내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7% 이내	50% 이내	29% 이내	12% 이내	2% 이상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 계	의 회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u>567</u>	-				
정무직 계	1	-				
일반직 계	<u>440</u>	-				
3급	-					
4급	3		3			
5급	24	2	10	2	1	9
6급이하 계	<u>413</u>	-				
별정직 계	12	-				
5급 상당	0	-				
6급 상당 이하 계	12	-				
연구직 계	2	-				
연구관	0	-				
연구사	<u>2</u>	-				
지도직 계	19	-				
지도관	2			2		
지도사	17	-				
기능직 계	<u>93</u>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564명</u>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553명</u></p> <p>2.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p> <p>----- 567명-----</p> <p>--,-----.</p> <p>1.----- : <u>556명</u></p> <p>2. (현행과 같음)</p>

개 정 이 유

- 사회복지인력 증원,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기록연구사 정원 반영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내실있는 군정수행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총정원 : 567명(증 3명)
 - 집행기관 : 556명 (증 3명)
 - 의 회 : 11명 (현행과 같음)

-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별표 2)
 - 일반직 : 8급 23.5%(증 0.5%), 9급 9.0%(감 0.5%)
 - 기능직 : 7급 16.5%(증 0.5%), 8급 12%(감 5%),
9급 33.5%(증 1.5%), 10급 33%(증 3%)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별표 3)
 - 행정 8급 증5, 행정9급 감1, 사회복지 9급 증3, 연구직 증1명,
기능직 감5명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12. 21.

정선군 조례 제2270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3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실·과의 설치) ① (생 략) ② (생 략) 2. 주민생활지원과장 ○ (생 략) ○ <u>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u> 3. 자치행정과장 ○ (생 략) ○ <u><신 설></u></p>	<p>제3조(실·과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2. 주민생활지원과장 ○ (현행과 같음) ○ <u><삭제></u> 3. 자치행정과장 ○ (현행과 같음) ○ <u>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u></p>

개 정 이 유

-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담당부서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부서별 업무조정(제3조제2항)
 -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사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12. 21.

정선군 조례 제2271호

정선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읍·면 위임사무 (제2조 관련)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삭제)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개장 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률시행규칙 제2조
8	읍면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
9	입산 신고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동법제52조제1항
10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 및 감액 결정	정선군재무회계규칙 제32조, 제33조
11	지방세 체납금 징수 및 지방세 관련 제증명등 민원처리	지방세기본법 제6조 및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제5조
12	불용품 매각처리	정선군물품관리조례 제17조
13	(삭제)	
14	(삭제)	
15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16	대마취급자(대마재배자) 허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7	건축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건축법 제82조제3항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신고 수리 및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신고 및 용도변경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 건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의 수리	
	- 건축법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항, 제22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에 대한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의 조치에따른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및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용벽등공 작물축조신고의 수리	
18	의료급여증 재사용	의료급여법 제8조
19	(삭제)	
20	상수도 급수신청 등 민원접수	정선군수도급수조례 제6조
21	상수도 검침 및 시설지 관리	수도법 제2조
22	읍·면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방자치법 제8조
23	먹는물공동시설 운영관리	먹는물관리법 제7조
24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	정선군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22조
25	재산세 과세대상 현황조사	지방세법 제6조 및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 제5조
26	개별주택 및 개별지 현황조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6조

개 정 이 유

-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위임사무의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군정운영을 위해 정선군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정선군 사무위임조례중 “별표 1”의 위임사무 개정(제2조 별표 1)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12. 21.

정선군 조례 제2272호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선군 청소년시설 명칭·기능·위치(제2조 관련)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정선군 청소년 문화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청소년 상담센터 활동 ○청소년 복지 지원센터 ○청소년 동아리활동 ○청소년 열린 도서관 운영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25
신동읍 청소년·아동 장학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청소년 상담센터 활동 ○청소년 복지 지원센터 ○청소년 자치지원센터, 동아리 활동 ○청소년 다목적 공간 및 공연장 ○청소년 열린 도서관 운영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정선군 신동읍 새골길 27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청소년 상담센터 활동 ○청소년 복지 지원센터 ○청소년 자치지원센터, 동아리 활동 ○청소년 열린 도서관 운영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시설물 운영 및 관리 	정선군 사북읍 사북6길 8

개 정 이 유

-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사북 청소년장학센터의 준공에 따른 명칭과 기능, 위치를 명시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건립한 청소년장학센터의
 - 명칭을 “사북 청소년장학센터”로
 - 기능을
 - ◆ 청소년 방과후 활동
 - ◆ 청소년 상담센터 활동
 - ◆ 청소년 복지 지원센터
 - ◆ 청소년 자치지원센터, 동아리 활동
 - ◆ 청소년 열린도서관 운영
 - ◆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운영
 - ◆ 생활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 위치를 “정선군 사북읍 사북6길 8”로 정함.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12. 21.

정선군 조례 제2273호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선군 군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 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

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6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함백 농공단지
2. 예미 농공단지
3. 증산 농공단지

제7조(정선군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감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폐광지역 진흥지구 안에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

축·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당해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당해 공장관리기관 또는 당해 공장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8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납세고지서에 도세와 군세가 병기(併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併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한다.

제9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3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선군 군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제7조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감면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제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①연도	②기분	③세목	④과세번호	⑤당초 결정세액	⑥감면 결정세액	⑦차인납부세액	⑧납부 기한
결정사유							

끝.

군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개 정 이 유

-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12.31.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함(제2조)
-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제3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제4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5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6조)
- 폐광지역 진흥지구 안에서 공장을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당해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함(제7조)
-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
 -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 지방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제13조, 제14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12. 21.

정선군 조례 제2274호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위원중 연장자가”를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위원장) ① (생 략)</p> <p>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u>위원중 연장자</u>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생 략)</p>	<p>제3조(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p> <p>③ (현행과 같음)</p>

개 정 이 유

- 지방자치법이 2011.7.14.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선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을 현행 위원중 연장자에서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을 현행 “위원 중 연장자”에서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개정함(제3조제2항)

고 시

정선군고시 제2011-141호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지정 고시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 12. 07.

정 선 군 수

1.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지정 목적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변경지정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정선군 지역경제 및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지정 내용

가. 보호구역명 : 『정선군전통상업보존구역』

나. 전통시장 : 3개소(정선시장, 고한시장, 사북시장)

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지정 범위·위치 및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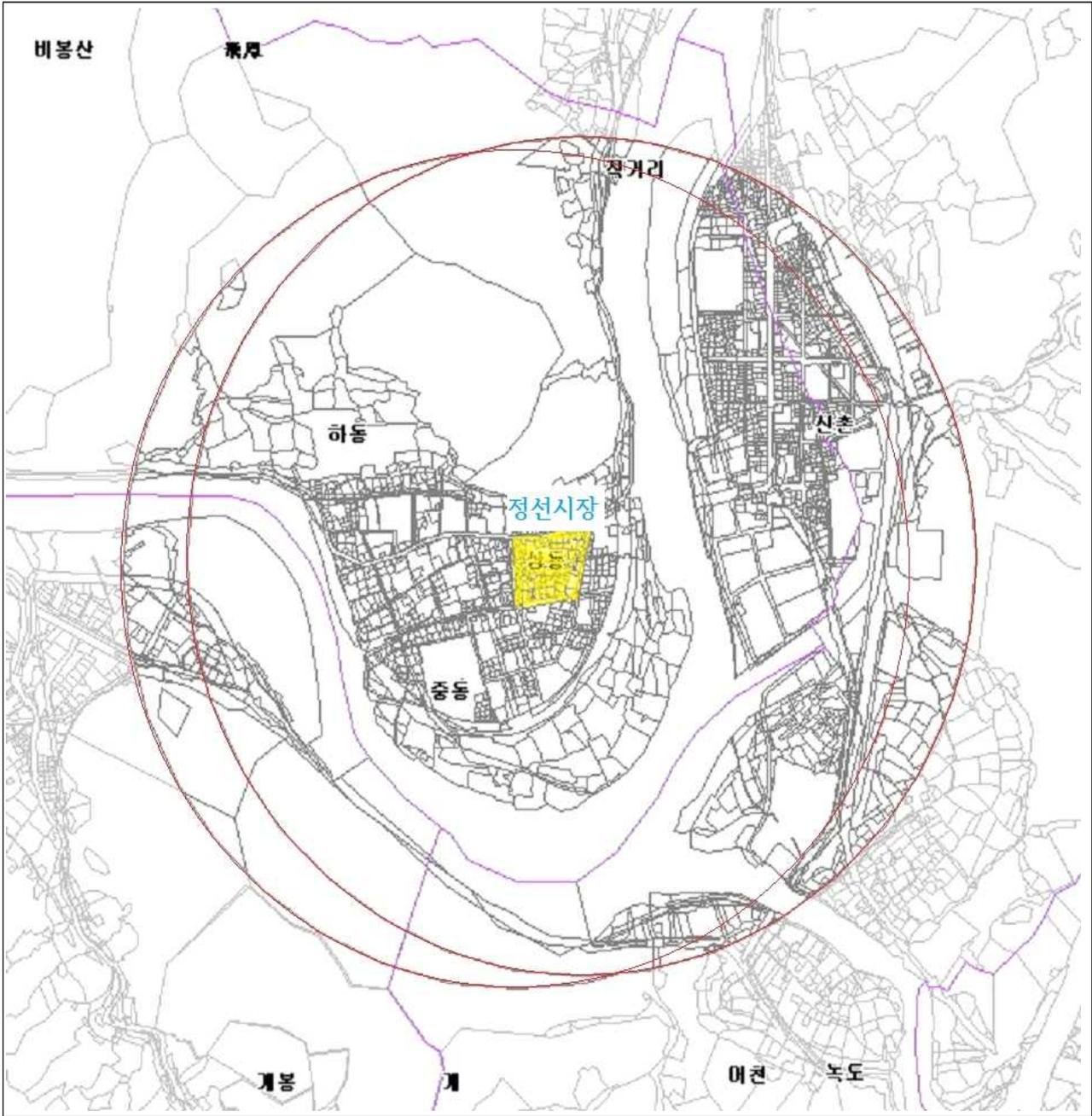
- 범위 : 도면 참조(바깥 붉은선 안쪽/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 위치 : 도면 참조
- 면적 : 14,765,019㎡
 - 정선읍 4,640,588㎡, 고한읍 5,380,936㎡, 사북읍4,743,49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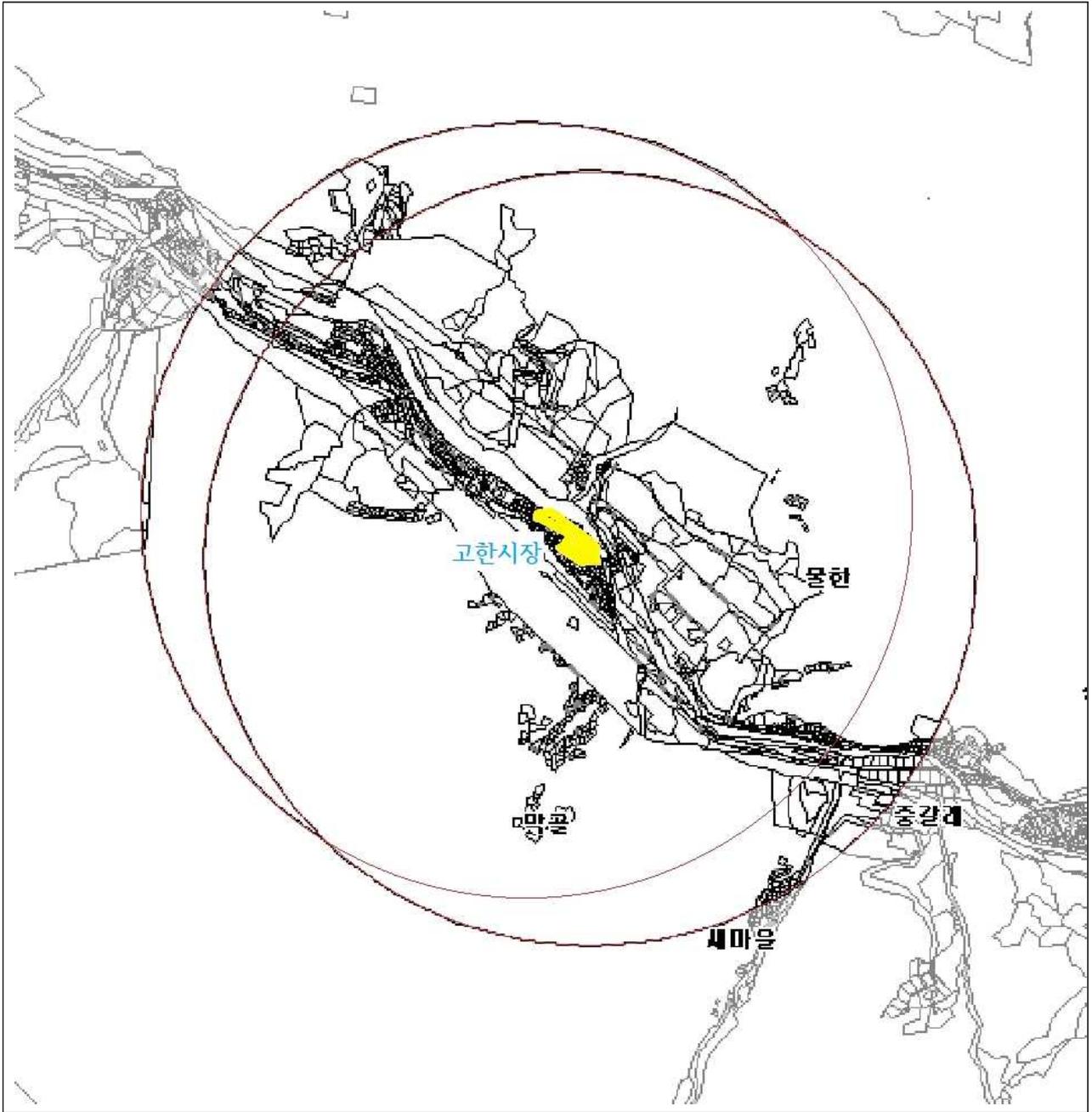
제2조(유효기간)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른다.

□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도면(정선읍) : 4,640,588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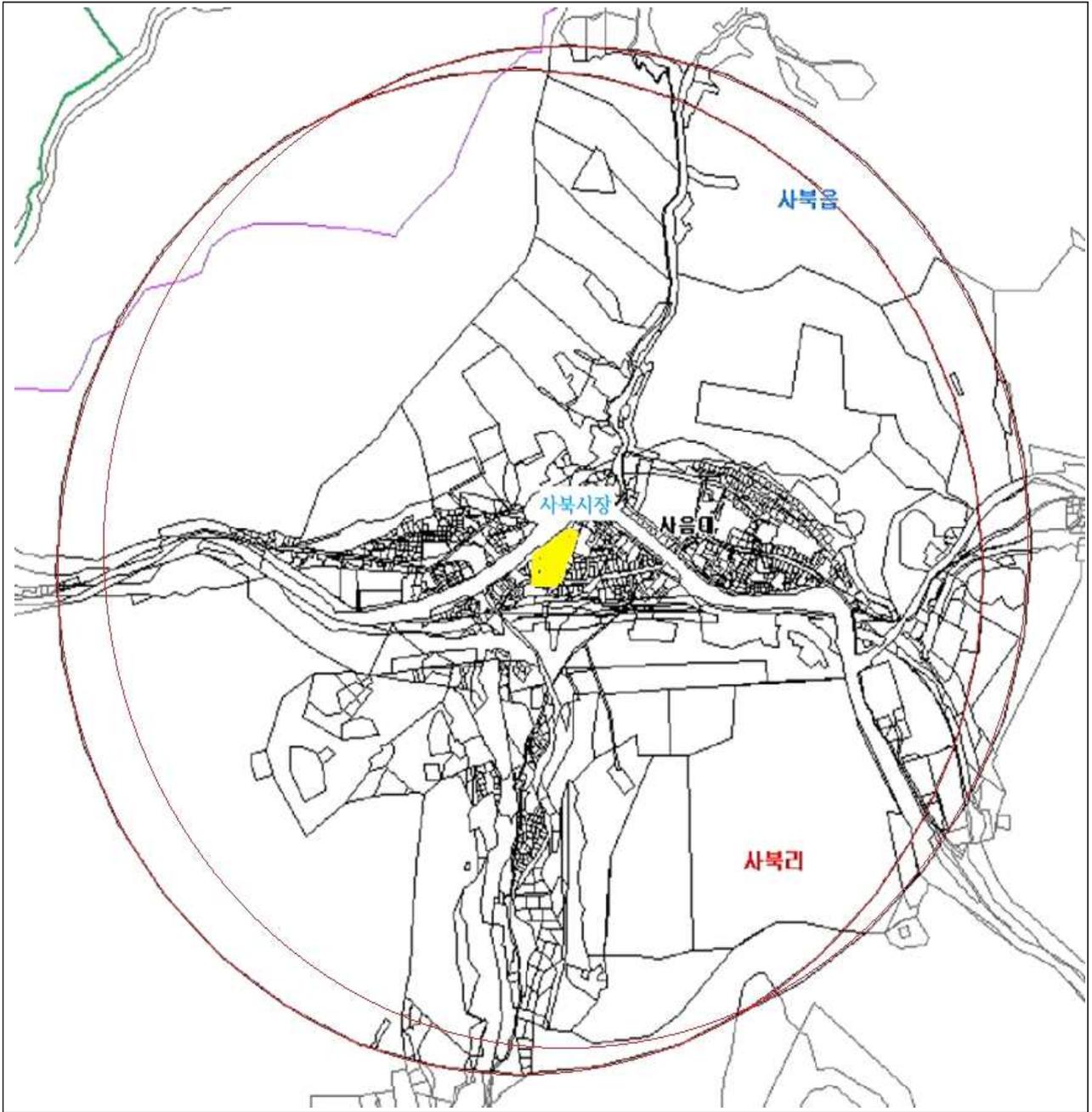
(정선시장 경계 : 봉양리 344-14번지, 봉양리 349-10번지)

□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도면(고한읍) : 5,380,936㎡



(고한시장 경계 : 고한리 62-243번지, 고한리 62-128번지)

□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도면(사북읍) : 4,743,495㎡



(사북시장 경계 : 사북리 366-44번지, 사북리 366-117번지)

공 고

정선군 공고 제 2011-659호

정선군 공공청소년시설(문화의집, 상담센터)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정선군 공공청소년시설을 『정선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2월 09일
정 선 군 수

1. 일괄 위탁대상 시설

가. 공공청소년시설 현황(개요)

시 설 명	위 치	시 설 종 류	주요현황	비고
정 선 군 청 소 년 문 화 의 집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25	청 소 년 문 화 의 집 (2003.03 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이전(2012.03월까지) ▪현 종합사회복지관 → 여성회관 이전예정 •여성회관 2층 (연면적 1,446㎡) 	시설 위탁
사 북 동 청 소 년 장 학 센 터	정선군 사북읍 사북6길 8	청 소 년 문 화 의 집 (2011.12 준공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1~지상3층 (연면적 6,544㎡) •사북초교 사용면적 위탁제외 (1층 780.43㎡) 	
신 청 소 년 아 동 장 학 복 지 센 터	정선군 신동읍 새골길 27	청 소 년 문 화 의 집 (2009.03 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1~지상3층 (연면적 1,926㎡) 	
정 선 군 청 소 년 상 담 지 원 센 터	“	청 소 년 상 담 센 터 (2010.01 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이전 ▪신동→사북센터 이전 •사무실 1, 상담실 2 	사업 위탁

나. 청소년시설별 현황

나-1. 정선군 청소년문화의집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추진사업(기능)	시 설 현 황
정 선 군 청 소 년 문 화 의 집 (정 선 읍)	청 소 년 문 화 의 집 (2003.03 개원) •이용정원 : 80명 •청소년지도사 :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방과후 활동 •청소년 상담센터 활동 •청소년 복지지원 센터 •청소년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 열린도서관 운영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층 사무실, 청소년 북카페(휴게실) 및 정보검색실, 동아리 활동 공간, 소강의실 •1층 댄스연습실, 공부방 등 •지하 1층 음악실습실(노래연습장), 등 문화감성 활동장

나-2.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추진사업(기능)	시 설 현 황
사 북 청 소 년 장 학 센 터 (사 북 읍)	청 소 년 문 화 의 집 (2011.12 준공예정) •이용정원 : 200명 •청소년지도사 :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방과후 활동 •청소년 상담센터 활동 •청소년 복지 지원 센터 •청소년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 다목적 공간 및 공연장 •청소년 열린도서관 운영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층 다목적 체육관(주민편의제공 생활체육시설) •2층 사무실, 청소년 북카페(휴게실) 및 정보검색실, 청소년자치활동공간, 소강의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공부방 •1층 장학센터 사무실 (사북초교 사용공간 위탁제외) •지하 1층 : 주차장

나-3.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추진사업(기능)	시 설 현 황
신 동 청 소 년 아 동 장 학 복 지 센 터 (신 동 읍)	청 소 년 문 화 의 집 (2009.03 개원) •이용정원 : 150명 •청소년지도사 :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방과후 활동 •청소년 상담센터 활동 •청소년 복지 지원센터 •청소년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 다목적 공간 및 공연장 •청소년 열린도서관 운영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층 정보화실, 사무실, 동아리방, 미디어실 •2층 사무실, 도서관, 강당, 공부방, 휴게실 •1층 식당, 주방, We Start 전용공간(위탁제외) •지하 1층 음악실, 댄스연습실, 기계실

나-4. 정선군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추진사업(기능)	시 설 현 황
정 선 군 청 소 년 상 담 지 원 센 터 (신 동 읍)	청 소 년 상 담 센 터 (2010.01 개원) •전문상담인력 필수	•위기청소년 보호사업 및 전 문상담 지원 •예방적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사업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추진	•신동 장학센터 → 사북 장학센 터 이전예정(2012.1월중) •사무실 1, 집단상담실 1, 개별상담실 1, 다목적실 1

2. 위탁사무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업무

3.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간

- 2012. 01. 01 ~ 2013. 12. 31

4. 운영수탁자 선정

가. 신청자격

1) 공고일 현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청소년 육성
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한 청소년단체로서 청
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

-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
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2) 다음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중에서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부담능력, 인
력, 기술 및 책임능력, 공신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

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서 규정한 운영 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고용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나)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세금이 없는 법인 또는 단체

나. 결격사유

1) 수탁업체 대표자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법인
및 단체

2) 단체(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부실운영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심의위
원회에서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외

5. 위탁조건

- 가. 수탁자는 관계법규와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을 준수하고 쌍방이 체결하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 나. 시설공간은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 사업에 부합 하지 않은 특정용도 사용은 불가.
- 다. 정선군 공공청소년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 요한 수행인력을 채용하여야 함.

시 설 명	이용 정원	수행인력	비고
정 선 군 청 소 년 문 화 의 집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 : 비상근 • 수행인력(2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지도사 2급 1명 이상 - 청소년지도사 3급 1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 조에 해당하는 자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 조의 결격사유 및 아동 관련 법들에 저촉되지 않는 자
사 청 소 장 학 센 터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 : 상근(청소년지도사 1급) • 수행인력(4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지도사 2급 1명 이상 - 청소년지도사 3급 2명 이상 - 관리직원(전기, 또는 기계·설비 등 유자격자) 1명 이상 	
신 동 청 소 년 아 동 장 학 복 지 센 터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 : 비상근 • 수행인력(3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지도사 2급 1명 이상 - 청소년지도사 3급 1명 이상 - 관리직원(전기, 또는 기계·설비 등 유자격자) 1명 ※ 방과후 아카데미 인력별도 	
정 선 군 청 소 년 상 담 지 원 센 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 : 비상근 • 수행인력(3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지도사 2급 1명 이상 - 청소년상담원 1, 행정원 1 	

- 라.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한다.
- 마. 위탁보조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함.
- 바.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 협약서에 의함.

6. 위(수)탁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가. 공고기간 및 방법 : 2011. 12. 09. ~ 12. 15.(7일간) / 정선군홈페이지
- 나. 접수기간 : 2011. 12. 13. ~ 12. 15(3일간)
 - ※ 접수는 접수기간의 근무시간(09:00~18:00)으로 한정하며, 접수마감일 (2011.12.15.) 18:00까지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접수장소 :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과 가족복지팀
(문의전화 : 033-560-2973)

라. 접수방법 : 신청자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인터넷 등 접수 불가)

7. 위(수)탁희망법인(단체) 신청서류(제출서류)

가. 위탁운영 신청서(소정양식 접수처 비치)

나. 운영책임자 관련서류 : 이력서, 자격 및 경력증명 사본 등

다. 단체 또는 법인현황

라. 법인(등록단체 일 경우 대표자)인감증명서

마. 사업계획서 및 운영인력 배치계획서

- 세입·세출 예산서

- 사업계획서(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 인력배치 및 인건비 지급계획(인건비 지급액 및 자부담 등)

바.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의 평가서류

(등기부 등본, 재산목록, 공시기자 또는 과세표준액 확인서 등)

사. 운영비 세입·세출예산서

아.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사업 실적 증빙서류 (있을 경우)

자. 최근 3년간 표창장 및 상장 사본

차. 법인(단체) 소개서

카. 기타 위탁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서류

※ 자료는 A4 규격으로 작성하여 순서별로 편철 14부 제출

※ 사본 제출시에는 원본 대조필에 대표자 도장 날인 후 제출

8. 수탁자(법인,단체) 결정

가. 수탁자 선정은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결과를 개별 통지함.

➔ 수탁신청 단체의 운영대표자(예정자)는 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서 등을 설명(10분 이내)하여야 하며, 불참시는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함.

※ 법인(단체) 대표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의 설명도 가능함.

나. 단독신청시에도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사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재모집공고

다. 수탁 신청자가 2개 이상 법인(단체) 일 경우 심사 배점표에 의거 적격자 순위

※ 1순위를 수탁자로 우선 결정하며, 1순위 법인(단체)가 허위서류 제출로 자격상실, 위·수탁 계약 포기 등으로 계약이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 3순위 법인(단체)순으로 수탁자를 선정함.

9.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나. 소정양식은 정선군 홈페이지(www.jeongseon.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과(☎033-560-2973)로 문의 바랍니다.

정선군 공공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신 청 인	단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기 간	~			
목 적				
운영계획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 공공청소년시설(정선군청소년문화의집,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정선군청소년상담지원센터) 위(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11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정선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 등본(등록단체일 경우 등록증) 1부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 대표) 인감증명서 1부
3. 법인의 정관(또는 회칙) 1부
4. 운영대표자의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5. 자산현황 1부
6. 사업계획서 및 운영인력 배치계획서 1부
7. 운영비 세입·세출 예산서 1부
8.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1부

정선군 공공청소년시설 위탁운영 계획서

1. 사업주체

- 신청자 법인(단체명) :
- 대표자 성명 :
- 법인설립 연월일 :
- 법인설립 목적 :
- 법인(단체)현황 :

2. 기본운영방침

-
-

3. 주요 수련프로그램 운영계획

- 수련대상
- 운영지도
- 프로그램 운영 등

4. 조직 및 인력관리

- 청소년지도사배치계획(지도자자격증 사본첨부)
- 기구 및 조직계획
- 직원 수급계획

5. 시설물관리운영에 관한 계획

6. 시설안전기준 및 운영기준

7. 활동계획(수련인원확보, 홍보등)

8. 연간운영예산 및 운영비 조달계획

- 수지계산서(가급적 '09, '10, '11년 별도 작성)
 - 수입예산액(산출내역)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근 거
관	항	목		

- 지출예산액(산출내역)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근 거
관	항	목		

○ 추정 손익계산에 따른 대책등

- 자체부담액 : 천원

9.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

10. 지역사회 발전기여(지역연계성)

12. 기타사항

사업계획(운영) 요약서

구 분	주 요 내 용
대 표 자	
법인설립 연 월 일	
설립목적	
법인(단체)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 임 원 : 명 ○ 법인재산 : 백만원(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시설운영 계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직 : ○ 종사인력배치 :
주요사업 계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운영예산 총괄 - 자체부담 계획서와 이에 따른 확보방안 ○ 주요 프로그램 운영, 사업수행전략, 사업추진방안 등
청소년 수련 시 설 운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실적 ○ 최근 3년간 수련활동 인원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보유현황 ○ 단체(법인) 및 종사자의 청소년 관련 수상 실적 ○ 홍보 및 지역협력 등

위탁운영 신청법인(단체) 현황

1. 단체(법인)의 일반현황

단체명	소재지	설립근거 및 목적	허가관청	설립일자	사무실 전화번호

※ 첨부 : 정관, 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 등록증 사본), 설립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2. 단체 (법인) 대표자 현황

성명(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주요학력	주요경력	연락처

※ 첨부 : 이력서

3. 단체(법인) 연혁

4. 단체(법인) 조직표

① 조직표

② 상근인력 현황

연번	직위	성명	근무기간	청소년시설 활동경력	담당 업무	자격증 (종류,등급)	비고

③ 단체(법인) 임원 현황

연번	직위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주요경력	비고

5. 주요 사업 추진 현황

-
-
-

단체 (법인)의 재산 현황

1. 재산 총괄

(단위:천원)

구 분	합계(A+B-C)	부동산(A)	동산(B)	부채(C)
계				
목적사업용 기본 재산				
수 익 용 기 본 재산				
기 타 재 산 (보통 재산)				

※ 재산목록,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 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2. 재산 성질별 현황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토지》

(단위:천원)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과표액	비고 (용도)

《건물》

(단위:천원)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과표액	비고 (용도)

○ 수익용 기본재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계증빙자료 첨부)

《토지》

(단위:천원)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연간수입	비고 (용도)

《건물》

(단위:천원)

연번	소재지	구조	면적(m ²)	소유자	연간수입	비고 (용도)

3. 동산 현황 (공증증서, 예금 잔액 증명, 유가증권 잔액 등 첨부)

(단위: 천원)

동산 형태	금 액	비 고

4. 부채 현황

5. 기타 재산

청소년 수련시설 사업 추진실적

1. 단체(법인)의 청소년 사업(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실적(최근3년간)

일시	사업명	주최/주관	추진내용 (지원예산)	비고

※ 첨부물 : 증빙자료

2.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 실적(최근 3년간)

일시	사업명	주최/주관	추진내용	비고

※ 첨부물 : 증빙자료

3. 단체(법인) 및 종사자의 청소년 관련 수상 실적(최근 3년간)

수상일시	소속	직위	수상자 명	수상내역	수상기관	비고

대표자 사용 인감계

인 감

위 인감은 본 법인(단체)이(가) 정선군 공공청소년시설(정선군청소년문화의 집,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정선군청소년상담지원센터) 수탁 신청시부터 협약 체결시까지 정선군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자료 :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2011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정 선 군 수 귀 하

작성시 유의사항 등

- 서식 작성내용은 사업심사 및 선정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므로
정의있게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함
※ 신청서 접수후 필요시 관련자료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할 경우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 예산운영계획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토대로 예산항목을 구분
설정하되 산출근거에 의거 편성

- 모든 서류작성은 A4용지에 W/P로 작성 제출

정선군 공고 제2011-670호

도로명주소 도로명 변경 심의 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3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15.

정 선 군 수

1. 공고기간 : 2011. 12. 15(목) ~ 2011. 12. 30(금)

2. 의견제출 방법

붙임조서의 도로명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민원봉사과 ☎ 033)560-2183, fax 033)560-2407,

주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봉양리 267)정선군청 민원봉사과】

가. 예비 도로명 등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도로명의 변경 절차



4. 첨부

○ 도로명 변경 심의 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조서 1부.

도로명변경심의결정에따른주민의견수렴조서													
위 계	관행구인정여부	변경전					변경후						
		도 명	기 점	종 점	길 이 (m)	폭 (m)	건물번호개수	도로명	기 점	종 점	길 이 (m)	폭 (m)	기초간격
길	여량면	여 송정길	여 량 면 여 량 리 699-20	여량면 여량리 756-1	1,457.93	4	50	4안)아우라지안길 5안)아우라지갈금길, 또는 아우라지가금길	여량면 여량리 699-20	여량면 여량리 756-1	1,457.93	4	20m
주민요청	안	1."여송정"이라는이름은해당지역과관련성이적고, 2."아우라지"라는이름으로지도등각종자료에표시되어있으므로"아우라지"가가입된도로명으로변경희망											
위원회심의내용		1안) 아우라지강변길 - 해당 도로가 강변을 따라 이어진 도로가 아니므로 강변길 적용 곤란 2안) 아우라지본길 - 현재 아우라지 길이 하천건너편에 존재. 아우라지의 본길에 대한 해석 논란으로 마을 주민간 의견 충돌 예상. 변경 곤란 3안) 원아우라지길 - 2안 의견과 동일. 변경 곤란 ※ 1안),2안),3안)의 도로명으로 변경은 부적합하다고 검토되어 군의견으로 제 4안)아우라지안길을 제시함. 4안) 아우라지안길 - 군에서 제시한 4안)아우라지안길로 도로명을 변경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되나, 해당 마을의 지명이 "가금" 또는 "갈금"으로 불려지고 있고, 주민의 의견이 '아우라지'가 표기 되기를 희망하고 있기에 "아우라지갈금길" 또는 "아우라지가금길"로 변경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판단됨, ※ 위원회에서 5안)으로 "아우라지갈금길 또는 아우라지 가금길"을 제시함. 5안) "아우라지갈금길" 또는 "아우라지가금길" - 해당마을의 지명이 "가금" 또는 "갈금"으로 둘 다 사용되고 있기에, '아우라지갈금길'로 할 것인지 '아우라지가금길'로 할 것인지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위원회결정		4안)아우라지안길, 제5안) "아우라지 갈금길" 또는 "아우라지가금길"로결정함. 【4안),5안)두개의도로명(안)을제시하고해당주소사용자다수의의견을수렴하여지역주민이원하는안으로사용하도록결정함.】											